

※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 정오·보충

(차후에 지적해 주시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로

정오표를 올리겠습니다.(6월25일 기준)

p. 121.

2. 다음 중 갑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OX 안 지문)

㉠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갑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갑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 병원 인턴 갑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익수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p. 140.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변호사)

(해설 부분)

㉡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먹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협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1991. 5. 28.선고91도80판결). 결국,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㉔ (○) 피고인이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수세에 몰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협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동석한 갑, 을 등은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항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제21조 제1항)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제21조 제2항)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 5. 28.선고91도80판결). 결국, 정당방위(제21조 제1항)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제21조 제3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

p. 274.

17. 갑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를 범하였다. A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B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 그 처단형은? (단,작량감경은 제외한다)

(해설 부분)

㉔ ~ , 가장 무거운 A죄를 가중하면 3년이상 50년 이하가 되는데,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㉔ ~ , 가장 무거운 B죄를 가중하면 3년이상 45년 이하가 되는데,

p. 371.

9. 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부분)

㉠ (X) 사자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 (X)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p. 461.

14. 다음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부분)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 정답 ㉠ (X) [1]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3] 갑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乙을 기망하여 을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20여회에 걸쳐 갑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갑은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는 갑이 소유자인 乙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갑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2022. 12. 16. 선고2022도10629판

결).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② (○)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1995. 7. 28. 선고95도997판결). 결국,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2008. 6. 12. 선고2008도2440판결).

④ (○) 유흥주점 업주가 과도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6. 7. 6. 선고2006도654판결).

p. 498.

10.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부분)

③ (○) 대판2012.9.13. 2010도11665

정답 ①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③ (X) [1]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금부 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동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2020. 10. 22. 선고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이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③

p. 554.

8. 甲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A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후 甲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 1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를 지우고 복사한 것을 B에게 보여 주면서 “사업자금으로 한 달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일 한 달 후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甲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B는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A의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해 甲 소유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부분)

정답 ③ ㉠㉡㉢(3개)은 옳은 지문이나, ㉣(1개)은 틀린 지문이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정답 ③ ㉔㉕㉖(3개)은 옳은 지문이나, ㉗(1개)은 틀린 지문이다.

p. 588.

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해설 부분)

② (X)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대판2005.4.15. 2002도3453)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② (X) [1]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사장이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위 사장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위 사장의 의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노법) 제40조 제2항소정의 '간여'에 해당된다(현재 노노법에서는 간여죄가 삭제되었다).

[2]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대판2005.4.15. 2002도3453).

p. 589.

4.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부분)

정답 ㉔ (X) [1] [2] (대판2011.9.08. 2009도13371).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㉔ (X) [1] [2] (대판2011.9.08. 2009도13371). 결국,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p. 621.

1.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3.1차 경찰채용)

(BOX 안 지문)

㉑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품에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㉑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p. 648.

6. 수사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부분)

→ 정답 ㉓ ㉑㉒(2개)는 옳은 지문이고, ㉒㉓㉔(3개)는 틀린 지문이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정답 ③ ㉠㉡(2개)는 옳은 지문이고, ㉢㉣㉤(3개)는 틀린 지문이다.

p. 683.

2. 다음은 자수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지문 부분)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의 효력이 있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p. 691.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경찰채용)

(해설 부분)

정답 ③ ㉠는 틀린 지문이다.(없다 → 있다)

정답 ③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정답 ② ㉠㉡(2개)는 옳은 지문이고, ㉢㉣(2개)는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②

p. 711.

9.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부분)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p. 789.

5.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 채용)

(지문 부분)

①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①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으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해설 부분)

①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피의자 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를 수사(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아래 내용으로 바꾸어 주세요.

①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피의자 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